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규정

2019년 12월 17일 제정  
2020년 07월 28일 개정  
2025년 01월 23일 개정  
2026년 03월 17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제5호 및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정관」 제22조(사업)규정에 따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이하 “제도” 라 한다)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참여 요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천기준 및 운영

**제3조(원칙)**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추천 과정을 공개한다.
2. 추천은 법령,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한다.
3. 기업별 연간 추천금액 및 횟수로 추천 한도를 설정하되, 계약의 특성 상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4. 조합은 추천한도 및 기준을 매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업 요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조합의 단체표준에 따라 제정된 조합 단체표준인증서를 보유하고 인증계약을 체결한 자

③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계약을 위해 [별표 3]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자

**제5조(추천기준)** ① 조합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따라 품목별로 추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별 추천횟수 및 연간추천금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추천방법)** ① 조합은 추천신청 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선착순’으로 추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만큼 적정 업체를 추천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1. 단체표준인증기업으로 사후심사 주기에 따라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경비, 수수료 및 사용료를 1년간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처분에 따른 추천 제한 기간 중인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추천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공동사업 참여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추천 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등록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연대책임)** 조합에서 당해 계약 물품의 제작설치에 참여한 조합원은 동 물품의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8조(제도운용상황 공개)** ① 조합은 추천현황 등에 관한 제도운용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추천현황은 조합원, 중앙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자료제출)** ① 공동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소기업·소상공인 계약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계약일반정보
  2. 계약서와 변경계약시 변경계약서
  3. 계약 첨부문서 외 내역서 일체
  4. 준공 및 납품도서
  5. 납품사진첩
-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추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표 4]에 따른 등록업체정보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정보 변경시 1개월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추천을 신청하는 기업은 ‘필수자격요건 및 기타요구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추천요청시 조합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납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계약체결과 함께 조합에 계약금액의 2%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종료시 증감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시 정산하여야 한다.

### 제3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위원회

**제11조(위원회 설치)** 조합은 원활한 제도운동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
2. 참여기업별 연간추천금액 및 추천횟수
3. 참여기업별 매출금액에 따른 추천한도금액
4. 신규참여업체에 대한 추천기준 결정사항
5. 참여기업에 대한 추천 제한 기간 결정 및 등록취소 또는 재등록에 관한 사항
6. 참여기업이 추천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불만 처리 심의 의결사항
7. 제도 운영에 대한 민원사항

8.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9.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한 [별표 5]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 및 기타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관련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중견 간부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조합은 추천현황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추천요청건의 내역, 공고서, 추천업체의 적정성, 계약 내용 등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별표 2]에 따라 허위자료 제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기업제제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조합원의 요청 등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의결할 안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원에게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해야 할 경우 예외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정된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심의회에서 의결 및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심의회 위원 및 조합의 관련 직원은 심의회 운영상 알게 된 사항을 목적 외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무지원)** 이사장은 심의회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직원 1명을 간사로 두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

**제22조(단체표준 품질관리)** ① 조합은 단체표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추천업체의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 여부 및 공정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2. 추천업체 품질관리 책임자 및 단체표준 관련 임직원의 교육 여부
3. 납품 물품의 품질확보 대책 점검
4. 하청생산 납품, 구매 납품, 완제품 수입 납품, 하자발생 및 납기지연 예방 지도
5. 공동사업에 관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② 단체표준업무 수행부서는 만족도 조사 결과 및 품질관리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참여기업에 대한 [별표 5] 조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3조(처분과 이의신청 절차)** ① 조합은 공동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위원회 개최 예정일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처분 대상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④ 이사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제24조(감경)** ① 이사장은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하여 시정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한 경우
3. 수요기관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회복된 경우
4. 그밖에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처분의 감경은 해당 처분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처분 기간의 단축
2. 처분 단계의 하향
3. 개선 권고로의 전환

③ 제1항에 따른 감경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5조(운영)** 조합은 제22조 각호에 대해 참여기업이나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기준

가. 추천 대상 품목

제품군	세분류		단체표준명	산업분류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	실물모형및전시물	공공전시서비스	33932

나. 품목 추천한도

중소기업간경쟁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추천횟수	계약금액 한도
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	실물모형및 전시물	24회	4,000백만원

다. 업체별 추천한도

참여기업 추천은 연간 24회, 총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위법 또는 부당 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구 분	위법 또는 부당행위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비 고
		1회	2회	3회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한 업체를 추천한 경우</li> <li>- 적격한 업체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li> <li>- 정당한 사유없이 추천기한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li>- 기타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추천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ul>	1년	2년	영구퇴출	- 해당조합별 제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의 추천심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li> <li>-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추천·입찰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li> </ul>	1년	2년	영구퇴출	- 해당업체별 제한

\*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 산정은 최종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5년간 위반한 횟수를 말한다.

## 공동사업 성실 및 청렴이행서약서

이 서약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소비자(수요기관) 보호」가 사회 발전과 전시문화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 하거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전시문화산업의 소비자(수요기관)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합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서약입니다.

1.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른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 조합은 전시문화산업 소비자(수요기관)의 권익 보호가 우리산업발전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임을 인식하며 독립된 기관을 통해 공정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3. 공동사업 참여기업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며,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 반복적 개선요구 불이행 등은 별도 제재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별표 4]

## 등록업체정보현황

업체명 : \_\_\_\_\_

가. 직접생산확인 보유목록

번호	대분류	소분류	세부품명	유효기간
1				
2				
3				
4				
5				

나. 입찰참가 등록현황(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번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제조생산 증명서류	비고
1				
2				
3				
4				
5				

다. 보유면허 및 등록업종 현황

번호	업종명(코드)	내용	비고
1			
2			
3			
4			
5			

[별표 5]

공동사업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

가. 평가 항목

「공공전시서비스 단체표준」 5.6.2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a) 기획력	b) 전문성	c) 문제처리능력	d) 친절도
e) 객관·구체적 정보제공	f) 태도와 적극성	g) 전반적 만족도	종합만족도

비고1 평가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2 평가항목은 위 표에 따른 항목을 기본으로 하며, 제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나. 위 평가 항목은 5점 척도로 하고 환산값은 아래표와 같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예시)

a) 기획력	b) 전문성	c) 문제처리능력	d) 친절도
매우만족(100점)	만족(80점)	보통(60점)	만족(80점)
e) 객관·구체적 정보제공	f) 태도와 적극성	g) 전반적 만족도	*종합만족도
보통(60점)	만족(80점)	만족(80점)	77.14점

항목별 합계점수(540) / 해당항목수(7) = \*종합만족도 점수(77.14)

다. 종합만족도 점수에 따른 처분

구 분	*종합만족도 점수에 따른 판정 구간	만족도 결과에 따른 제한사항		
		1회	2회	3회
경결함	59~45점	개선권고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중결함	44점 이하	6개월 정지	9개월 정지	1년간 정지

비고1 누적 횟수는 해당 사업연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간 적용한다.

비고2 수요기관 사정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비고3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추천 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비고4 추천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재등록은 제6조에 따른다.

비고5 처분의 감경은 제24조에 따른다.